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리플레인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Reeflane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및 공급업
2. KIOSK(무인정보단말기) 개발, 제작 및 판매유통업
3. 시스템통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업
4.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5. IT분야에 대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6. 모바일 등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7. 온라인 정보제공서비스업
8.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9.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4.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15.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6.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업
17.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컨설팅업
18.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유지보수 및 용역제공업
19. 상기 각 호와 관련된 서적, 인쇄 및 출판업
20. 상기 각 호와 관련된 광고대행 및 홍보업
21.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22.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eefla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 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過怠金)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의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3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식의 분할·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7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 매수권 선택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 상장 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 제17조 3.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 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8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9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단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 (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5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26조 (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 제27조 (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0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산(計算)

- 제31조 (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

제32조 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 2) 별도적립금 약간
- 3) 주주배당금 약간
- 4) 임원상여금 약간
-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4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된다.

제35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6조 (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7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38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3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리플레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
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2023년 04월 19일

리플레인 주식회사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1길 17 8층(문래동2가, 자리타워)

발기인 : 김영일 (930505-152881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55동 1302호(중산동, 하
늘도시우미린2단지)